

2006. 4. 28.(금)

제12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

# 심사보고서

-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##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4. 18. 제 천 시 장  
나. 회부일자 : 2006. 4. 19.  
다. 상정일자 : 2006. 4. 26.(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영복)

#### 가. 제안사유

- 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」 실시, 「개발부담금제」의 부활 및 「이행강제금」 부과, 「토지관리 정보시스템」 운영 등 토지 관련 업무의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보강
-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등을 위한 인력보강
- 보건소 방역활동의 연간 실시에 따른 운전원 조정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6명에서 999명으로 3명 증원  
→ 집행기관의 정원 : 979명을 982명으로 3명 증원  
→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7명 (변동없음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#### ○ 정원변동 현황

구 분	구조조정 이전정원	2001.12.31 현정원	현 정원	표준정원	보정성원	금회조정	조정후
계	1,114명	896명	996명	948명	976명	3명	999명
일반직			788명	739명		3명	791명
기능·고용			191명	190명			191명
별정·정무			17명	19명			17명

○ 정원의 관리는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, 부득이한 경우 보정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하겠으나,

○ 새로운 업무의 발생과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추가인력의 수요에 따라 증원하는 경우와 금번 같이 상급부서로부터 지정업무의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는 경우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내 업무변동에 따른 인원감소 요인은 없는지도 자체진단을 통하여 항상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, 운전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부서간 조성을 통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임

○ 우리시의 정원관리 현황은 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정원 948명, 보정정원 976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51명이 초과 되며, 금번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연간 추정액 112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판단되는 바

○ 이번 정원조정은 토지관련업무 정원 2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공무원 1명이 증원 승인 되었으며, 운전원 1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건소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적·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

- 현재정원 보다 3명이 증원 요구 되었는데, 그중 소나무 재선충예방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직으로 증원 하는가? (유경상 의원)
-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인가? (이동수 의원)
- 소나무 재선충병 담당인력이 1명은 부족하지 않은가?

### 나. 답변요지 (자치행정과장 이영복)

- 전문적인 임업7급 1명임.
- 2007년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임.
- 전문적인 임업직으로 전담하도록 증원하는 것이며 기존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됨.

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